



: 2019-01-28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2017나2031928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피티씨 아이엔씨
2. 앤시스 아이엔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3307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 2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B은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에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B의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에 대한 항소,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들의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2은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2은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피티씨 아이엔씨(이하 '원고 피티씨'라 한다)에 150,000,000원,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앤시스'라 한다)에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 앤시스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원고 앤시스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각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피티씨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 앤시스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 및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피티씨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5.0(이하 '프로이 5.0'이라 한다. 위 프로그램은 현재 Creo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이하 '크레오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앤시스는 2차원(2D), 3차원(3D)에서 전자기장의 물리 현상을 해석하는 공학 용도 프로그램인 '맥스웰 14.0(이하 '맥스웰'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4)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생산, 품질, 납품, 영업 등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의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1) 피고 B은 2013년경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 사무실에서 프로이 5.0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3. 7. 8.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원고 피티씨의 동의 없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2013년경 위 사무실에서 맥스웰의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4. 11. 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원고 앤시스의 동의 없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들은 2015. 12. 14.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와 관련하여 프로이 5.0과 맥스웰의 복제물을 설치·사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03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피티씨의 주장

피고 B이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것은 프로이 5.0에 관한 원고 피티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B은 저작권 침해 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피티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사용료를 곱한 금액'인데, 프로이 5.0을 불법복제하는 경우 29개 모듈이 활성화되고, 위 모듈의 가격은 합계 833,537,000원인바, 원고 피티씨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그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이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을 제2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거래처의 도면 파일 열람을 위하여 프로이 프로그램의 구매를 요청하였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프로이 2.0을 지급받았던 사실, ② 위 프로이 2.0은 버전이 낮아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의 도면 파일을 열람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 B은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복제·사용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



조 제1항에 따라(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김해지사 생산총괄업무 담당자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 제1항이나 상법 제398조 제2항, 제210조는 이 사안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티씨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 피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피티씨가 프로이 5.0의 현재 버전인 크레오 프로그램의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프로이 5.0을 최신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프로이 2.0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위 프로그램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한 프로이 5.0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 이전에 프로이 2.0 2개를 구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피티씨가 프로이 5.0의 현재 버전인 크레오 프로그램의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프로이 5.0을 최신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프로이 5.0이나 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업무에 필요한 프로이 2.0을 제공하는 등 피고 B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업무에 필요한 프로이 2.0을 제공한 사실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를 이용하여서는 거래처의 도면 파일을 열람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 B이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산정 여부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2) 제1심법원의 패라메트릭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피티씨는 2015. 8. 19. 크레오 프로그램 중 기본모듈인 Creo Essentials Team(PKG-3513-F, 이하 '크레오 에센셜 팀'이라 한다) 모듈을 포함한 9개 모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에 판매하고, 2016. 5. 31.에는 145,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갑 4, 5, 2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티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이 5.0의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프로이 5.0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② 사용자가 불법복제시 활성화된다고 원고 피티씨가 주장하는 프로이 5.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 중 29개 모듈 전부를 구매한 사례는 없다.

③ 원고 피티씨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크레오 프로그램 판매 내역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통상 4개에서 9개 모듈을 구매하였는데(갑 제24 내지 30호 증), 위 판매금액에는 1년간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된 모듈의 구성은 크레오 에센셜 팀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외에는 사용자의 업종, 업무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르고, 일부 할인도 적용되어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2)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피티씨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피티씨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 피티씨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6, 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티씨의 손해액은 2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피티씨는 프로이 5.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에 관하여 사용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위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만약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 피티씨로부터 프로이 5.0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프로이 5.0의 모듈 전체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5. 1. 7. 프로이 2.0 2개를 47,000,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을 제1호증의 4), 당시 어떤 모듈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④ 피고 B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은 당시 C 주식회사로부터 'Rotor Bearing Assy'와 'Stator Assy' 부품의 생산을 의뢰받고 피디에프(PDF)나 아이지에스(IGS) 또는 에스티피(STP) 형식의 부품 설계도면과 베어링 부품을 전달받아 베어링 부품 이외의 세부 구성부품은 외주 제작을 통하여 조달한 후 이를 조립하여 C 주식회사에 생산·납품하였다(을 제14 내지 16호증).



⑤ 피고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보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과거 구매하였던 프로이 2.0을 지급받았으나, 위 프로그램의 버전이 낮아 위 설계도면 파일이 열리지 않자 프로이 5.0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함에 있어서는 프로이 5.0 중 적어도 기본모듈(PKG-3512-F, 피고의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Pro/Engineer Foundation XE 또는 크레오 에센셜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크레오 에센셜'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피티씨가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모듈 가격은, 위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또는 2017년 기준 가격으로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 크레오 에센셜 모듈 1개의 가격은 14,281,000원이다.

⑦ 원고 피티씨는 2016. 5.경 크레오 에센셜 팀 모듈 1개(모듈 가격은 18,138,000원이고 1년 유지보수비 3,297,900원을 포함하면 21,435,900원이다)를 포함한 8개 모듈을 판매하면서 별도로 크레오 에센셜도 13,601,000원(1년 유지보수비 2,062,600원을 포함하여 15,663,600원)에 판매하였다.

⑧ 한편 피고들은 위 프로이 5.0의 불법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 피티씨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피티씨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프로이 5.0 불법복제물 최종 사용일인 2015. 3.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앤시스의 주장

피고 B이 맥스웰 불법복제물을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것은 맥스웰에 관한 원고 앤시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B은 저작권 침해행위자로서 원고 앤시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사용료를 곱한 금액'인데, 맥스웰의 불법복제물은 8개 모듈이 활성화되고, 위 모듈의 가격은 합계 280,5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피티씨는 피고 B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그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이 맥스웰 불법복제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 앤시스에게 맥스웰 불법복제물의 복제·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앤시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산정 여부

제1심법원의 원고 앤시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앤시스는 맥스웰의 9개 모듈의 정품가격은 304,700,000원이고, 원고 앤시스가 위 모듈 중 2016년 경에 포함되었다고 자인하는 Pexprt 모듈을 제외한 8개 모듈의 정품가격은



280,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앤시스가 주장하는 위 금액이 맥스웰의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맥스웰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② 원고 앤시스의 판매내역에 의하면, 사용자가 맥스웰의 모듈 전부를 구매한 사례는 없다.

③ 위 판매내역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맥스웰 3D 모듈에 맥스웰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 등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견적금액과 최종금액이 다르며, 최종 금액에는 납품 후 12개월 보증과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고, 구매한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그 판매가격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앤시스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 B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 앤시스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2)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4, 6, 7, 14, 16, 38 내지 39, 41, 4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맥스웰 불법복제물 복제·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앤시스가 입은 손해액은 35,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맥스웰 프로그램은 각종 모터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자장을 해석하고 전계강도나 지속밀도를 산출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

② 피고 B은 개인적으로 전자기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맥스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모터 관련 2D 내지 pdf 도면에 코어 형상을 다시 그려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B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김해지점은 그 무렵 C 주식회사로부터 'Rotor Bearing Assy'와 'Stator Assy' 부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세부 구성부품을 외주 제작을 통하여 조달한 후 이를 조립하여 위 부품을 생산·납품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품 생산에 맥스웰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 앤시스의 맥스웰은 2013. 6.경 나라장터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의 학원에 맥스웰 3D QS 모듈 1개가 7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한다)에 판매되었고, 2015. 6.경 같은 경로로 맥스웰 3D 모듈 1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9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되었다(을 제9호증, 갑 제16호증).

⑤ 원고 앤시스는 2014. 12.경 ANSYS/Mechanical CFD 맥스웰 3D 1세트



를 150,000,000원에, Mechanical Emag with 맥스웰 3D 1세트를 130,000,000원에, 2016. 3.경 맥스웰 3D 모듈 1개와 다른 모듈 등을 합하여 237,000,000원(그중 맥스웰 3D 모듈 1개의 가격은 94,950,000원)에, 맥스웰 3D 모듈 1개를 105,500,000원에, 2016. 6.경 맥스웰 3D 모듈 1개와 다른 모듈 등을 합하여 125,000,000원에, 2016. 9.경 맥스웰 3D QS 모듈 1개와 다른 모듈 등을 합하여 91,800,000원(그중 맥스웰 3D QS 모듈 1개의 가격은 50,00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⑥ 위 판매내역에 의하면, 맥스웰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맥스웰 3D 모듈 또는 맥스웰 3D QS 모듈을 구입하거나 위 모듈에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매가격에는 납품 후 12개월간의 보수, 유지보수비, 맥스웰 사용에 관한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다.

⑦ 원고 앤시스는 맥스웰 이용 시 동시 접속자 수, 사용가능한 단말기 수 등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플로팅 라이선스, 노드락 라이선스 등)를 판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대의 컴퓨터에만 맥스웰 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단독 사용한 피고 B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다수의 동시 접속자 수 또는 다수의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위 판매 금액을 그대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앤시스에게 35,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인 17,500,000원에 대하여는 맥스웰 불법복제물 최종 사용일인 2015. 3. 24.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나머지 17,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맥스웰 불법복제물 최종 사용일인 2015. 3. 24.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앤시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피티씨에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피티씨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을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피티씨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B의 피고 앤시스에 대한 항소, 피고 앤시스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피티씨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2019-01-28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윤선

 판사 민달기